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67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67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4238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717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4 선고 2011가합39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 선고 2016. 4. 29.

환송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1140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42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T 고속화도로, U, V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을 1,423,138㎡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하차도·터널·육교 등 교량·하천교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지하차도, 터널, 교량은 모두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택지조성공사비에 계상된 지하차도·터널·육교 등 교량·하천교량 공사비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